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제2026-92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 9호(행정)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9A	한시임기제 9호 (행정)	1명	채용일 ~ '28. 9. 30. ※ 주 35시간 근무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북 구미)
9B	한시임기제 9호 (행정)	1명	채용일 ~ '27. 5. 9. ※ 주 35시간 근무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북 구미)

※ 결원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 9A와 9B는 채용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9A	행정	한시임기제 9호 (행정)	○ 대학 행정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9B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응시 자격 요건	
한시임기제 9호(행정) (9A·9B)	응시 자격 요건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관련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 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 우대 경력산정 시 **응시자격 경력제외 후 24개월까지만 인정**(기간별 차등 배점) ※ **직무분야: 일반행정, 사무관리** ※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고려사항]

1.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2.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3.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증명서에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명시, 발급기관 직인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 연관성 판단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함.
-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 발급, 모든 휴직기간은 경력 미인정
- 경력기간 :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실제근무시간 반드시 기재-예시, 주당 20시간)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4.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5.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6.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합격자 결정 방법: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평정순위 결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동순위자 조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면접 재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0. 19.(월) ~ '26. 10. 30.(금)	'26. 10. 27.(화) ~ '26. 10. 30.(금)	'26. 11. 5.(목) 예정	'26. 11. 12.(목) 예정	'26. 11. 19.(목)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0. 27.(화) 09:00 ~ 10. 30.(금) 18:00
- 원서접수방법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우편번호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양호동)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본관502호) 공무원 인사담당(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장소와 같음
 ※ 접수기한 내 방문가능. 단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문의전화 : 054)478-7098

나.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우편 및 방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종 증명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다. 제출서류 및 별지 서식 참조)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 부착(5,000원)

 ※ 수입인지를 부착(첨부)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PDF 파일로 업로드

※ 단면인쇄, 자료 편철은 집게를 이용하며 스테이플러는 사용금지, 번호순서대로 편철

다. 유의사항

- 관련분야 일정한 경력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 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 해당 채용은 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채용으로, 공고된 휴직 기간 종료시 임기가 종료됩니다.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1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한시임기제(A) : 임용일 ~ '28. 9. 30.(휴직공무원의 휴직기간 內)**
 - **한시임기제(B) : 임용일 ~ '27. 5. 9.(휴직공무원의 휴직기간 內)**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월요일~금요일(09~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 35시간 기준: **월 2,053,000원**

 * 2026년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제9호 봉급기준액(2,346,300원) × 35시간 / 40시간

-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등,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054-478-709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직무기술서(한시임기제 9호(행정))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행정 직렬 (9A, 9B)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2명 (9A 1명, 9B 1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북 구미시)

주요 업무	○ 대학 행정 업무 – 학사행정, 예산 및 회계, 일반행정 및 서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
필요 지식	○ 행정·사무분야 관련 지식 및 관계법령 해석능력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 능력
응시자격 요건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 직무분야 근무경력 인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우대요건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 우대 경력산정 시 응시자격 경력제외 후 24개월까지만 인정 – 기간별 차등 배점 ※ 직무분야 일반행정, 사무관리 ※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에 대하여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경력, 우대사항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실무경력은 가능한 자세히 기재 ㅇ 자필 서명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ㅇ 자필 서명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필수서류]**	ㅇ A4 4매 이내로 작성(쪽번호 부여) -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직무에 대한 이해,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ㅇ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7.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7호)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참고 **[필수서류]**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별지서식 제8호)를 사용하여 제출 가능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9.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련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우대요건]**	ㅇ 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우대요건]**	ㅇ 자필 서명 필수 - 미제출시 관련 점수 부여 불가
11.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해야 함
12.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서류]**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고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ㅇ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전/후 성명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ㅇ 과거주소변동 사항 불필요,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13.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1～10 해당서류만 제출) 외 **다른 서류는 제출 금지**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면 인쇄, 자료 편철은 집게를 이용하며 스테이플러는 사용금지,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서명 및 응시지원분야에 “○” 표시 필수

성 명	(서명)	응시분야	9A 또는 9B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필수)	
2. 이력서(필수)	
3. 자기소개서(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7. 경력(재직)증명서(필수)	
8.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련분야 면허 및 자격증(선택)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격증 제출시 필수)	
10.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선택)	
11. 주민등록초본(필수)	
12.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선택)	

* 제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O” 표시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9A 또는 9B 택 1*		
응시자격		경 력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행정)	
응시자격		경 력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9A 또는 9B 택 1*

* "9A와 9B"는 근무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작성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⑤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9A 또는 9B 택 1	성명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 력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직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 력	○○○○ (○○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주임 (9급)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명	자격 검정 기관	자격증 취득(예정)일	비고
자 격 증	한글명(영문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사항은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바람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 작성

-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행정) 9A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행정) 9B 택 1

[응시자격]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❶상근, ❷비상근, ❸시간제로 구분,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충족 후 관련분야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며,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경력은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합산 가능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되므로 작성 불필요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력·자격증 및 기타 우대요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서명)	응시직급 및 분야	9A 또는 9B 택 1

◎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 * 제출 시 삭제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

- (분량) A4용지 2매 이내
- (양식)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글자색 검정, 줄간격 160%
- 마지막에 작성일자 및 작성자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주요경력, 특기사항,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서명)	응시직급 및 분야	9A 또는 9B 택 1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제출 시 삭제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

- (분량) A4용지 4매 이내
- (양식)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글자색 검정, 줄간격 160%
- 마지막에 작성일자 및 작성자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포함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명)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통일부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9A 또는 9B 택 1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참고용

발급번호 :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②주 소				

경력사항	③근 무 기 간			④ 직위(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상세기재)	근무형태
	부 터	까 지	기간				
	2021.1.1.	2024.12.31.	4년 0월 0일	주임	총무과	구매, 물품관리	주40시간 주20시간
	※년.월.일로 기재						

⑤근무년한	총 근무기간: 년 월 일	⑥퇴직사유	

⑦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기 관	년월일	종 류	기 관

⑧발급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직인)

발급 담당자	
발급부서	
성 명	(인)
연 락 처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인)

<별지서식 제9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 별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담당자 기재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